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4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 박수영·정성국·이헌승

백종헌 • 이종배 • 신동욱

박덕흠 • 서명옥 • 우재준

곽규택 · 김기현 · 조정훈

정연욱 · 조배숙 · 김 건

김예지 · 강명구 · 김소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학교의"를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로, "학습권을"을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의 적용례)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집회 및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④ (생 략)	제한 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			
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			
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	2		
법」 제2조에 따른 <u>학교의</u> 주			
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	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		
위로 <u>학습권을</u> 뚜렷이 침해할	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u>학습권 또는 휴식권을</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